개발 용역 계약서

계약 번호: D170118-1

**1. 계 약 일 자 :** 2017년 01월 18일

**2. 계 약 명 :** 참저축은행 ODS시스템 구축

**3. 계 약 금 액 :** 일금일천삼백만원정 (\13,000,000)

세금 공제 전 금액

**4. 계 약 기 간 :** 2017년 01월 18일 – 2017년 03월 17일

**5. 대금 지급일 :** 제2조에 의함

**6. 제세 공과금 :** 총액의 3.3% 원천 징수

상기 인력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주식회사 두베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김지훈 (이하 ”을”이라 한다)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갑: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1-1 아이에스비즈타워 507호

주식회사 두 베

대표이사 석 광 진 (인)

을: 생년월일

성 명 김 지 훈 (인)

**제1조 총칙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.

“을”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표준 근로기준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“갑”이 제시하는 근무조건, 제반기술수준, 검수방침, 관리지침, 명세서 및 기타, “갑”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.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, 문서화 등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.

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분석, 설계,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.

**제2조 대금청구 및 지불**

1. 계약 기간: 2017년 01월 18일 – 2017년 03월 17일 (총 2 개월)

2. 등급 구분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성 명 | 기술등급 | 단가 |
| 김 지 훈 | 고급 기술자 | 6,500,000원 |

3. 지급일 및 금액

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 소득세(총액의3.3%) 납부는 “을”이 부담한다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지급 월일 | 금액 | 지급조건 |
| 02월 15일 | 2,930,000원 | 지정계좌 현금입금 |
| 03월 15일 | 6,500,000원 | 지정계좌 현금입금 |
| 04월 15일 | 3,570,000원 | 지정계좌 현금입금 |
| 합 계 | 13,000,000원 |  |

4. 상기 금액은 재료비, 교통비, 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.

**제3조 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**

“을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의 통지에 위하여 계약 해제(전부, 일부)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.

2. 정당한 사유 없이 “갑”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.

다만,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.

“갑”은 “을”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.

“을”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 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

**제4조 계약기간의 조정**

본 계약 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본 계약기간 변동 시 “을”의 추가 근무일수에 따라 용역비용을 계산한다.

**제5조 업무의 내용 및 수행**

“을”은 “갑”의 계획 및 작업지시 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.

**제6조 권리의 귀속**

“을”이 “갑”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“갑”에게 귀속한다.

**제7조 개발장비**

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“을”이 준비한다.

**제8조 상호협조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 관례에 따라 이행하며,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.

**제9조 계약효력**

“갑”,”을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**제10조 분쟁의 해결**

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“갑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.